

[별표 1]

공중·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 (제4조 관련)

구 분	고층시가지 ¹⁾	중층시가지 ²⁾	저층시가지 ³⁾	주택지 ⁴⁾	농지,임지 ⁵⁾
공중저해율	2.9%	9.4%		9.4%	6.5%
지하저해율	2.1%	5.6%		5.6%	3.5%

- 1) 고층시가지 :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.
- 2) 중층시가지 : 11~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.
- 3) 저층시가지 : 4~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·공장·상가 등이 혼재된 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준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 등을 말한다.
- 4) 주택지 :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용일반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공업지역·녹지지역·관리지역·농림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하며,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.
- 5) 농지·임지 : 농지·임지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사회,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.
- ※ 고층·중층·저층 시가지 등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층수 및 주변 건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